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40

발의연월일: 2024. 12. 27.

발 의 자: 안상훈・이성권・유용원

김미애 • 박성훈 • 김소희

우재준 · 성일종 · 박정훈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안전관리인증 등과 관련하여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운영하는 조사·평가 시스템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운영하는 인증·연장시스템이 서로 달라 정보 관리와 상호간 정보 공유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들도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기록·관리·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8조의6(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기록·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 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영업자 또는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영업자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8조의6(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
	전관리인증 등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기록
	·관리·제공하기 위하여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
	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u>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u>
	인증받은 영업자 또는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영업자가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
	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의 효
	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의 구

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프 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에 필 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 다.